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. 3. 16 선고 2021가단395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16.

주 문

1. [별지 2]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5. 7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. 6. 4. 접수 제277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[별지 1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하석찬

별지